

영등포구의회
제 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3.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26호로 2016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면 공유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의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급되는 사업의
근거를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주자 및 상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 신설

(제2조제1항 관련 : 안 별표1의2)

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범위 축소

- 공영주차장 → 공영노상주차장(안 제2조의2제1항)

다. 전용주차구획의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제5항)

라.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추가 신설(안 제25조제3호)

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변경

(안 별표1 <비고> 4호, 7호, 16호, 18호, 19호 : 제2조제1항 관련)

바.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수정(안 별지 제8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12. 3 ~ 12. 2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근거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 근거와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여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함.
- 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을 공영 주차장에서 공영노상주차장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함.
- 3)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1)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함.

1)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비어있는 주차면을 모바일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공유하는 사업

- 4) 보조의 대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추가함.
-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면제대상자 및 할인대상자 정비함.
- 6)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